

한의예·학과 발전기금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학과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발전기금이라 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학과 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포함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장, 부학장, 한의학과장, 의료원장, 대구부속한방병원장, 포항부속한방병원장, 한의과 동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두며, 학내, 학외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발전기금 모금에 도움이 되는 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외부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발전기금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예산 및 결산 수립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출연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당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관리) ① 발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학장이 된다.

② 발전기금 관리 책임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에 관련하여 한의과대학 교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내규는 2025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한의예·학과 발전기금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학과 발전기금 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에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확인) ①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담당 행정직원이 분기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① 발전기금 및 발전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② 발전기금 및 수익금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한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
2. 한의과대학 건물 증축 및 시설 관련 경비
3. 한의과대학 교원의 연구비
4. 한의과대학 학생 장학금
5.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비
6. 기타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소그룹팀) ① 원활한 발전기금 모금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그룹팀을 둘 수 있다.

1. 지역사회 모금팀
2. 한의과대학동문 모금팀

② 소그룹팀의 팀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지역사회 모금팀) ① 팀장은 팀원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팀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한의과대학동문 모금팀) ① 팀장은 팀원을 구성하여 한의과대학 동문회를 통한 기수별 및 권역별 모금 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팀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고액기부자 예우) 고액기부자의 경우 본교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외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고액의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1. 한의과대학 주요행사의 초청
2. 기부자가 원하는 명칭(이름 또는 아호 등)을 새긴 기념물의 설치, 건물명칭 부여, 건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명칭 등의 부여
3.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부 칙

(시행) 이 내규는 2025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